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3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개선에 관한 의견서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개선에 관한 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성폭력피해자나 가족의 재판동행 요청을 받은 9건의 사건에 대해 16회의 재판 동행 및 공판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매 재판 동행 시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법적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재판 중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 중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나 그 주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합의 종용 및 보복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피고인과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 및 그 친족(지인 등)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나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지인 등)에게 의사에 반해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연락하는 행위가 판결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미리 고지를 한다면 피고인 측의 합의 종용을 목적으로 한 접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합의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변호사나 검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성경험,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문에 대해 재판부의 적절한 제지로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법원 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안내문 비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청사 1층에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브로슈어를 볼 수 있었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탈'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내가 있지만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실 등에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문 비치가 필요합니다.

들어가며

성폭력 피해의 치유와 회복은 성폭력에 대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반응, 상담자 및 수사•재판 관계자(경찰, 검사, 판사)의 태도 및 접근방법,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피해자의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만나는 피해자들 중에는 법적 과정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거나 심지어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법정 증언을 요청받은 피해자들은 법원이라는 낯선 공간, 심지어 가해자까지 있는 불편한 공간에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증언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재판 관계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편견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왜 가해자와 만났는지', '늦은 시간에 왜 가해자와 함께 있었는지' 등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질문들을 증언과정에서 또 받게 될까봐 법정에서의 증언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의 권리인 증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법률개정을 거치면서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1)]이 생겨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사재판이라는 제도적 절차 속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에게 증언은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피해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행되면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권리'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3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이하 지원단)활동을 기획했습니다.

기획의도를 홍보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로 재판동행 지원단[2)]을 구성하여 재판동행을 진행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성폭력피해자나 가족의 재판동행 요청을 받은 9건의 사건에 대해 16회의 재판 동행 및 공판 모니터링(별첨1 참조)을 진행했습니다. 매 재판 동행 시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체크리스트〉[3)] 작성을 통해 실제 재판 과정에서 변화된 제도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를 체

1)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 시 비공개 재판, 피고인의 퇴정, 신뢰관계자의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언, 진술조력인 신청, 증인지원관 등
2) 재판동행지원단 모집공고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했고 반성폭력 활동에 관심 있는 68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체크리스트〉는 재판과정 중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원본은 별첨2로 첨부했습니다.

크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체크리스트〉 문항

1.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나요?

2. 피고인,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 그 친족(지인 등)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주의를 주었나요?

3. 피해자,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나요?

4. 법원 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었나요?

***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추가 체크 항목**

1. 해당사건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였나요?
   -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부적절한 질문
   -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질문
   - 과거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 품행, 직업 등에 대한 질문 등

2. 피고인의 변호사가 해당사건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반복 질문을 하였을 시 담당판사가 적절하게 제지하였나요?

3.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나요?
   -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는지 여부
   - 추궁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

4.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증인)의 진술권이 잘 보장되었다고 생각되나요?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체크리스트>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법적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재판 중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이 참관한 16회의 재판 중 피해자의 정보가 거론된 경우는 6회이었으며 이 중 1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피고인의 변호사, 판사, 검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인적사항과 관련된 증언 및 증거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이 주로 발생했고, 피해자 이름이 공개되는 경우는 매우 빈번했습니다.

특히 E사건[4]의 경우 언론에 주목을 받으며 세세하게 보도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말했고, 재판부가 주의조치를 주지 않아 여러 차례 휴대전화번호가 여과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단이 재판부에 이후 재판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가 언급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5]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 중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개인이 드러나는 것 뿐만아니라 피고인이나 그 주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합의 종용 및 보복위험성이 높아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대법원의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제2385호)**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판 시작 전에 피해자의 출석 및 신원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칭해야하는 경우라면 이름이

4) 별첨1 내용 중 재판동행사례 참고.
5) 의견서 전문은 별첨3으로 첨부했습니다.

아닌 '증인'이나 '피해자'로 호칭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A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 대신 '피해자'로 지칭할 것을 재판부에서 권고했고 재판 내내 피해자의 신상이 언급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상 기록의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6] 2013년 6월 19일 개정된 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 신고자(고소인, 고발인 포함)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 특정범죄 신고자등의 보호법이 준용되도록 하는 바, 이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2. 피고인과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 및 그 친족(지인 등)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H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집에 몇 차례 찾아간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1회 주의를 주었지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부모의 회사까지 찾아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A사건의 경우, 법정구속 된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 와서 피해자가 협박으로 느껴졌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주의를 따로 주지 않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피해자는 또 다시 피고인의 지인이 찾아올 것에 대한 불안감을 사건을 지원하는 상담원에게 호소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폭력범죄의 경우 양형에 있어 합의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과 그 가족이 더더욱 합의에 매달리게 되어 피해자가 협박에 가까운 정도의 합의 종용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계속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와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직접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이 없더라도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재판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합의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제재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나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지인 등)에게 의사에 반해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연락하는 행위가 판결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미리 고지를 한다면 합의종용으로 인한 2차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합의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지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변호사나 검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 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3.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원단이 동행한 9건의 사례 중 피해자가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경우는 사례 A와 C, 2건이었습니다. 2건의 사례 모두 피해자 증언 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사례의 경우 증인지원제도가 잘 적용된 사례로 증인지원관의 안내, 증인지원실 이용, 차폐막 설치 후 화상증언 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자리배석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인으로 지원단이 받아들여져서 방청하게 되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진술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 할 수 있도록 진술과정에서 쉬는 시간을 주는 등의 배려가 있었습니다.[7)]

하지만 C사례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했으나 다수의 지원단이 방청이 피해자의 안정적인 진술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지원하는 상담원 1인만 방청이 허용되었습니다. C사례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증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크게 한숨을 내쉬고 고압적인 말투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강간당한 여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다”, “1심에서는 비공개재판 신청 안했는데 2심에서는 왜 신청했냐?”, “대학 나왔냐? 대학 나온 여자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냐?”, “평소에도 경황이 없냐?”, “성관계 경험 있냐? 없냐?”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질문들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8)] 피고인의 변호권이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과 상관없는 성경험,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문에 대해서 재판부이 적절한 제지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한 보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 법원 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안내문 비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청사 1층에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브로슈어를 볼 수 있었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방법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 증인지원관제도에 대한 안내문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 국선전담변호인 안내 포스터만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보호조치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경•검찰에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사례 중에는 사건 진행에 대한 결과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며 걱정하는 피해자도

7) A사례 재판동행 이후 지원단원의 소감문을 별첨4로 첨부하였습니다.
8) C사례 재판동행 이후 지원단의 소감문을 별첨5로 첨부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원에서 증인지원관제도를 만들어 증언에 대한 목적,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된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탈'에 들어가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높이기 위해 민원실 등에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문 비치가 필요합니다.

별첨1. 재판 동행 사례

재판 동행 사례

사례	피해유형	법원	지원내용
A	특수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6월~9월 5차례 피해자 동행 (재판참관 2회, 증언 3회)
B	강간 등	서울고등법원	공판 모니터링
C	강간 등	서울고등법원	7월~8월 피해자 동행 2회 (재판참관 1회, 증언1회)
D	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공판 모니터링
E	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공판 모니터링
F	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공판 모니터링
G	준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공판 모니터링
H	강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8월~10월 피해자 가족 동행 3차례
I	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피해자 가족 동행 1차례

별첨 2.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체크리스트 〈재판동행 지원단용〉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체크리스트 〈재판동행 지원단용〉			
사건번호			
피해유형			
피해자특성	장애(유형:)/ 외국인 / 이주노동자 / 미성년 / 기타( )		
담당 재판부		담당판사 이름 :	
기 일	차	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
체크리스트 작성자			

내용		예	아니오	비고
1.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나요? (예시) 가명 사용 등				
2. 피고인,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 그 친족(지인 등)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주의를 주었나요? (예시) -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압력,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변호사, 검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주의 - 합의에 대한 의견은 담당변호사, 검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주의를 주는 등				
3. 피해자,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나요? (예시) 접근금지 명령 등				
4. 법원 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었나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경우〉				
1. 해당사건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였나요? -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부적절한 질문 -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질문 - 과거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 품행, 직업 등에 대한 질문 등 (예시) "왜 2차에 갔는가?",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가?", "그 당시 왜 저항하지 않았나? 동의한 것 아닌가?"등의 질문이 맥락상 증언의 신빙성,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하거나 공격하는 질문으로 사용될 경우 체크	판사			
	검사			
	변호사			
2. 피고인의 변호사가 해당사건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반복 질문을 하였을 시 담당판사가 적절하게 제지하였나요? (예시) "그런 부분은 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증인에게 확인하려하지 말라"				
3.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나요? -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는지 여부 - 추궁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	판사			
	검사			
	변호사			
4.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증인)의 진술권이 잘 보장되었다고 생각되나요?				

〈재판부의 개선점에 관한 의견〉

별첨3. 피해자 신상정보 언급에 관한 의견서

의 견 서

사건명 :	2013 노 00000
피고인 :	고00

안녕하십니까? 인권 존엄성 확립과 정의 구현을 위해 책임을 수행하는 귀 재판부 노고에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와 함께 재판을 방청하는 '2013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본 상담소의 지원단은 성폭력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주체자로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재판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모니터링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내는 활동을 합니다.

본 상담소 지원단은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사건번호 2013 노 00000] 6월 28일 공판을 방청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은 일정한 체크리스트지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6명의 지원단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공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우선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6월 28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새로운 증거자료(문자복원)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핸드폰번호가 반복적으로 노출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6월 28일 공판을 모니터링한 지원단 6명 전원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사건진행과정이 세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재판과정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 속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험과 공정한 재판과정은 성폭력피해자에게 중요한 치유과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귀 재판부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2013년 7월 17일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 일동

별첨4. A사례 재판동행 소감문

성폭력사건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홍글씨-

2013.07.09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변호사의 지리한 신문이 3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피해 증언 반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검사측에서 증언 녹음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녹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허가와 재량이긴하나 기록에 남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화상증언실 이용과 법률조력인(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피고인과 검사라는 이유로 재판 기록을 열람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기존의 수동적인 위치에서 조금은 더 피해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본다.

이날 피해자 변호사는 방청석이 아닌 증언석 의자에 앉았는데, 화상 모니터를 보며 피해자의 표정과 진술을 살피고 열심히 메모하시는 열의를 느꼈다. 올해 06.19일 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법률조력인을 방청석에서 불러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재판장의 설명이 있었고, 변호사에게 전용 선풍기를 틀어주었는데 이전 재판에서는 본적이 없는 훈훈한 상황이었다. 화상 증언실은 예전에 견학해 본적이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로 기억하는데, 형사 법정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공간으로 신뢰관계자의 동석하에 피고인과 동일하지 않은 공간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석 앞에 차폐막을 두어서 모니터상으로도 피해자를 볼 수 없게 조치하였고, 피해자 또한 화상 증언실에서 법정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시선을 신경 쓸 일이 없어서 나름의 배려가 보장됨을 느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집요하고 지엽적인 신문 사항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기색이었는데, 재판장의 적절한 신문 제지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도 마셔가면서 답변하라는 태도에 안심이 되었다.

놀랍도록 권위적이고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을 경험했던 나로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가 신선하기까지 했다. 진술에 압박감을 받고 있을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재판부를 호의적으로 보게 된 면도 있지만,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보편화되기를 바래본다.

재판동행지원단으로서 방청하며 체크리스트 작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의견 개진 활동들이 쌓여서 권위적인 재판부를 변화시키는데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아직 참가전인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별첨5. C사례 재판동행 소감문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

-조제-

2013년 8월 29일 4시 반, 나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앉아 있었다.

앞서 차례가 밀린 두 개 재판이 연이어 끝나고, 상담소에 재판동행을 요청한 피해자의 재판이 시작됐다.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가 법정에 들어와 증인석에 앉았다.

판사는 피해자에게 두 가지를 물었다. 가해자를 대면해 증언할 것인지 아닌지, 증언을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여부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길 원했다.
가해자 변호인이 판사에게 왜 비공개로 증언을 하고자 하는지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요청했으나, 어쨌든 피해자의 가해자퇴정 신청은 받아들여졌다(이 재판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다).

또 피해자는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되, 함께 온 상담소 활동가 2명과 지원단 3명은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있길 원했다. 그러나 '어랍쇼!' 판사는 5명이라는 우리 머릿수가 많다고 판단했는지 1명만 남고 나가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고 피해자에게 '권유'(라고 쓰고 강요라고 읽는다)했다. 이유가 사람이 너무 많으면 피해자 증인 신문할 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 얘기도 확실하진 않다. 왜냐면 판사의 말이 애매모호하기가 수준급이라 진정 그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리 짚어보고 저리 짚어봤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족이 아니어서 신뢰관계인이 되지 못한 걸까?', '가족이었다면 5명 모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았겠나?', '우리의 존재가 재판을 하는 데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까?' 이런저런 판사의 말을 해석하며 일단 법정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서 사건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받지는 않는지 지켜볼 수 없는 걸 안타까워했다.

1시간 가까이 된 느낌이었던 긴 시간의 피해자 증인 신문이 끝나고 우린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가해자 신문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검사와 변호인, 가해자가 최종변론을 했다. 이때 변호인의 말이 압권이었다. "성범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는 성범죄는 그 죄가 큰 만큼 죄의 유무를 가리는 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혹시 피고인의 말이 옳지는 않을지 생각해봐 주시길 바란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결국엔 그의 얘기에서 '엄격한 잣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들이대란 얘기나 다름없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얘기에선 너무 오버하신단 생각이 들다가, 여자 정조라는 얘기가 나온 대목에선 그가 한 명의 희극인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고한 표정과 법정을 울리는 압도적인 목소리,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한 마디만 했어도 그 상황을 모면했을 겁니다"라는, 그의 캐릭터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말들. 모두가 서로 완벽한 조합이었다. 가해자가 마지막 한마디로 검사에게 '강제력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원심을 부정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며, '유죄입증 책임이 있으신데,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성폭력 특례법과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성폭력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선 피해자 비공개 신문 때도 5명이 넘는 지원단이 뒤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지원단을 소개했음에도 판사의 결정으로 나가 있어야 했던 이번 재판에서, 난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또 '정조'라는 단어가 아직도 법정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을 경험하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한 변호인의 희극적인 열연이었다고 웃어넘기기엔 성폭력에 대한 오래된 통념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언제라도 우릴 둘러쌀 수 있음을 느낀 재판이었다.